

「2025년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제58차 리더스포럼 IR피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IR 피칭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공고 개요

- ☐ 행 사 명: 제58차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 ☐ 행사일시: 2025. 3. 19.(수) 13:00 ~ 18:00
- ☐ 행사장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Quad(대구시 북구 호암로51)
- ☐ 공고일정: 2025. 1. 22.(수) ~ 2. 24.(월) 18:00 까지

2. 모집 개요

- 모집규모: 8개사 내외
- 신청요건: 전국 만 7년 이내 창업기업(개인, 법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일 기준)

-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3. 지원내용

- 사전 IR 코칭 프로그램(필참)
 - IR Deck 코칭
 -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IR Deck 컨설팅 1회 실시
 - IR Deck 디자인 제작 지원(일부 기업)
-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당일 IR Pitching(필참)
 - 포럼 당일 IR Pitching
 - 지역 내외 투자자 약 20명 현장 참여 및 일반 청중 참관
 - 투자자 1:1 투자 상담
 - 사전 매칭 투자자와 1:1 투자 상담 지원(기업당 3~4회)
 - 부스설치 및 네트워킹
 - 아이템 소개를 위한 기업별 부스 지원 및 네트워킹

□ 기타 후속연계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투자 및 중기부 TIPS 추천검토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TIPS 운영사 투자 검토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타 지원사업 연계 안내
- 대구스케일업허브, 유니콘 랩 등 입주공간 연계 안내 등

4. 공고 및 운영일정

□ 리더스포럼 공고 및 운영 일정

내 용	세부 일정	비 고
공고일정	2025.01.22.(수)~2025.02.24(월) 18:00	대구창업허브 등
신청접수	~2025.02.24(월) 18:00까지	DASH 접수
선정평가	2025.02.26.(수)	8개사 내외 선정
합격자 발표	2025.02.27.(목)	개별 통보
IR 코칭데이	2025.03.05.(수) 14:00~17:00	합격자에 한함
제58차 리더스포럼	2025.03.19.(수) 13:00~18:00	-

※ 상기 모든 일정은 대표자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DASH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https://startup.daegu.go.kr/>)

□ 제출서류

-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IR피칭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IR 피칭 자료 1부(5분 발표 분량)
- (선택) 사업소개가 가능한 기타 자료, 특허, 증빙자료 등

6. 문의처

소속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성장실 투자운용팀	박지현 매니저	053-759-8614	jihyun505@ccei.kr
	현선진 매니저	053-359-3669	seonjin@ccei.kr

참고

‘2025년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주요일정(안)

구분	공고	평가위원회	IR 코칭	행사 개최
제58차	2025.01.22.~ 2025.02.24	2025.02.26.	2025.03.05.	2025.03.19.
제59차	3~5월	2025.05.28.	2025.06.04.	2025.06.18.
제60차	6~8월	2025.08.27.	2025.09.03.	2025.09.17.
제61차	9~11월	2025.11.26.	2025.12.03.	2025.12.17.

※ 상기 공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평가위원회/IR코칭/행사일정은 변동없음

붙임

신청 제한 안내

①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②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